##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94 발의연월일: 2020. 12. 11.

발 의 자:김윤덕·한병도·장철민

이규민・정춘숙・유정주

김수흥 • 박상혁 • 김철민

신영대 · 양정숙 · 노웅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궤도를 "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·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"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,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, 노면전차,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,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###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운송 체계"를 "케이블철도, 노면전차,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의 운송 체계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"궤도"란 사람이나 화물을	1
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	
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	
련된 운영·지원 체계가 유기	
적으로 구성된 <u>운송 체계</u> 를	케이블철도,
말하며, 삭도(索道)를 포함한	노면전차, 모노레일 및 자기
다.	부상열차 등의 운송 체계
2. ~ 14. (생 략)	2. ~ 14. (현행과 같음)